

# 노보리베쓰에 오시는 손님께

2020년 4월 1일(수)부터 노보리베쓰시 입탕세(入湯税/입욕세)가 아래와 같이 개정됩니다.

입탕세는 쾌적한 노보리베쓰 여행을 제공하기 위해 행정기간으로서 관광진흥 등에 활용하고 있습니다.

## 노보리베쓰시



오오유누마가와 천연족욕탕

### 노보리베쓰시청에서 입탕세 알림

#### ■입탕세라는?

국가의 법률(지방세법)과 노보리베쓰시 세조례로 정해진 온천시설의 입탕행위에 대하여 부과된 세금이며, 환경위생 시설, 온천원 보호관리시설 및 소방시설 기타 소방 활동에 필요한 시설정비, 관광진흥 (관광시설의 정비를 포함)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됩니다.

#### ■입탕세 금액에 대해

표준적인 입탕세금액은 1명당 1일 150엔이며 각 자치체마다 금액을 정할수 있습니다.

노보리베쓰시청에서는 2020년 4월 1일부터 입탕세 인상을 실시하며 받은 입욕세는 모두 관광으로 방문하시는 분이 불편하지 않도록 시설정비 등의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.

**※2019년 12월 31일 이전에 예약이 완료되고, 2020년 4월 1일 이후에 숙박하는 경우의 입탕세는 예전대로 150엔입니다.**

#### ■2020년 4월 1일 이후 부터 적용

구분	입탕세	인상액
일반객		
숙박 (주1)	¥300	¥150
당일	¥50	변경없음
수학여행 (고등학생이상)		
숙박	¥70	변경없음
당일	¥50	변경없음
유스호스텔 회원		
<small>※일본유스호스텔협회 회원 료관/여권을 이용한 경우 (현재 해당시설 없음)</small>		
숙박	¥100	변경없음
당일	¥50	변경없음
탕치객		
<small>※치료를 위한 장기 체류자 7박이상 체류하는자 1박당</small>		
	¥70	변경없음

(주 1) 1박 2일은 1일로 계산함